

## 통 · 관 · 뉴 · 스

### 냉동공차 등 19개 품목 수출이행기간 3개월로 단축

2006년 1월1일 부로 조정·할당·양허관세율이 1%~20% 인하된 수입원재료 19개 품목(HS4단위)에 대한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동 품목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된다.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2년이나 할당관세 등의 관세율이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세청은 과다환급방지를 위해 수출이행기간을 최단 3개월로 단축하고 있으며 관세율 인하후(1월1일이후)에 수입원재료로 생산·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율 인하전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게 되면 관세율 인하분만큼 과다환급이 발생된다.

이에 관세청은 올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인화된 19개품목의 과다환급방지를 위해 12월3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는 재고자산회전기간(원재료 매입에서 제출판매까지) 등을 고려해 3월 31일까지 수출된 물품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출이행기간을 단축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수출이행기간 경과후 수출된 물품이지만 12월3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이 허용된다.

### 금년부터 기본관세율 개편 단계적으로 추진

금년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중 관세특례제도가 도입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재경부가 마련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본관세율 개편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1단계로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품목간 세율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개선과제는 금년내에 보완하여 개편을 추진하고, 2단계로 DDA협상 타결(2006년 말 목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 등 대폭적인 관세율 체계 개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관세환급 및 감면제도도 개선된다. 관세환급제도에 있어서는 FTA 체결국의 원자재가 사용된 수출품에 대한 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금년말 적용시  
한이 만료되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장비 감  
면의 성과분석 실시 등을 통하여 감면제도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경부  
업무계획에서는 또 대외협력 강화와 선진통상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DDA 및 FTA협상을 적  
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 WTO 정부조달 협정에 학교급식 용 농산물조달에 대한 협정 적용 배제 등 양여안 제출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에  
따르면 지난 1일 우리정부는  
WTO정부 조달협정의 개정 및  
양허 확대협상에 따른 우리나  
라 1차 양허안을 WTO사무국  
에 제출했다.

동 1차 양허안은 공정거래 위원  
회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울산 광역  
시를 협정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하며 정부 조  
달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 분야도 호텔서  
비스 및 여행·관광 에이전트 서비스, 건설장비  
임대 서비스를 새롭게 양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정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조달규모도 현행 45만SDR(약 6.7억원)에서  
40만 SDR(약 5.8억원)으로 인하하며 학교 급  
식용농산물 조달에 대한 협정적용을 배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1SDR=1.46US\$) 외교부에 따르면 근번  
1차 양허안은 여타 GPA 회원국과의 협상결과  
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포장제품 규격규제 폐지 등 단력적 운영 전망

EU의회가 최근 포장제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  
하는 새로운 지침(안)에 대해 대다수의 찬성으  
로 승인함에 따라 포장산업계는 보다 다양한 사  
이즈의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는 Kotra 무역관의 설명이  
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하  
고 포도주, 커피, 설탕 등 기  
초 식품에는 의무규격을 엄격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집행위가 포장규격 폐지 지침  
을 제안한 것은 현재 거의 전 기본제

품의 포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을 최적화하고 소비자들  
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무역관은 현재의  
선택적 조화(optional harmonization) 아래 존  
재하는 각종의 포장사이즈 규정을 폐지하고 기  
존 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일관성 있고 융통  
성 있는 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이 채택되면 산업계는 다양한 사



이즈의 포장제품 생산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반면 회원국들에는 EC법이 규정하는 사이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자국 법으로 별도 규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처리기간  
39 → 15일로 대폭 단축**

지난해 상반기 39일이 소요되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이 작년 12월 기준 15일로 단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전심사 신청('04. 2,116건, '05. 2,636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05.상반기 39일이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05.12월 현재 15일로 단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종전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던 제1류~제81류까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싱가포르FTA 2006년 3월2일 발효**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정부는 FTA 협정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한·싱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해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및 남북경협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싱FTA 협정 발효 즉시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59.7%(6,724개 품목)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수 기준 91.6%(10,315개 품목)에 대해 최장 10년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금 번 한·싱 FTA는 싱가포르와의 교역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동남아 시장진출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망투자 대상 국가인 싱가포르와의 연계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㉟

